

2026년 재선충병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소속 2026년 산림병해충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1. 채용개요

모집분야	인원	근무기간	주요업무	근무지
재선충병 모니터링	1명	'26. 8. 3. ~ '26. 12. 20.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시료 검경보조 - 드론예찰 및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 사무보조 및 실험실 물품 수량 관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출근 및 주근무지), 부산시 전역

※ 근로기간 · 근로시간 등은 예산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고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최종합격 및 채용건강진단서 확인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제한사항 및 결격사유 (붙임 1 참조)

- 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중복 지원 불가 (모집분야별 중복접수 불가)
- 결격사유 해당자 및 계속근무한 총 기간 2년 초과자 지원 불가

※ 「부산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름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다. 우대조건 (붙임 2 참조)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멀티콥터)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우대
- 청년층 또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산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가산점 적용

3. 근로조건

가. 보 수

- 재선충병 모니터링 : 98,200원/일 ※ 2026년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단가 적용

나. 근무기간: 2026. 8. 3. ~ 12. 20. ※ 예산 등 여건에 따라 근로기간 조정(단축·연장) 가능

다. 근무시간 및 근무지: 주 5일(40시간, 월~금) 근무

- 재선충병 모니터링: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지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출근장소 및 주요 근무처) 및 부산시 전역
- ※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우천휴무, 하·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등)

라. 담당업무

분야	인원	업무내용
재선충병 모니터링	1명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시료 검경 보조(현미경 육안검사) ○ 드론예찰보조, 드론예찰영상 고사목 좌표 분석 보조 ○ 사무보조 및 실험실 물품 수량 관리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마. 기 타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의무가입(본인부담금공제 후 임금지급)
- 「근로기준법」, 「부산광역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에 의해 휴일, 휴가 등 보장

4. 선발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40점

- 응시자격에 맞는 제출서류 등 구비 및 적격여부 심사
- 평가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정

나. 2차 면접시험 : 60점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기준표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시험방식
 - 직무평가 : (재선충병 모니터링) 엑셀 및 QGIS 활용능력, 산림병해충 기초지식
 - 면접심사 : 병해충 분야 업무이해도, 전문성, 직원소통, 자세 등
 - 체력검정 : 앉았다 일어서기, 8자 보행 등 (국민체력100 측정항목 참고)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필기·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용결격사유 또는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시 합격 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

라.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채용공고	7. 24(금) ~ 7. 29.(수)	· 시 홈페이지 게시 · 일모아시스템 연계 공고등록	6일간
응시원서 접수	7. 28.(화) ~ 7. 29.(수)	· 본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2일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7. 3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면접평가 및 실기시험	7. 31.(금)	· 필기 및 실기(체력, 수행능력 등) ·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7. 31.(금)	·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교육 및 사업착수	8. 3.(월)	· 안전교육 및 근로계약서 등 작성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6. 7. 28.(화) ~ 7. 29.(수),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채용담당자 및 이메일 접수 주소

부서	담당자	메일주소	연락처
녹지사업팀	김주섭 연구사	dfd94@korea.kr	051-888-7124

- 이메일접수 시 응시원서 서식의 서명란 날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접수 확인 여부는 이메일 회신 예정이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수목진단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 6)

- 홈페이지(<https://green.busan.go.kr>) ⇒ 사업소 소개 ⇒ 찾아오시는길 참조

- 응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응시자와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

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각 모집분야에 맞는 서식 활용)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6)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

※ 필기 및 면접일까지 제출가능

○ 해당자에 한하는 기타 서류 (선택)

- 우대조건 : 장애인 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등

- 가점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 가정 증명서 등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 시 서류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여 가점비율이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 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채용의 정지 또는 무효, 향후 채용 시험의 응시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채용비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절차 등 사항에 위배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내외부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한 경우

2) (부정행위)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험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평가 순위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별도 모집 공고 생략)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근무지까지의 출·퇴근 및 점심식사는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은 매년 병해충 발생상황 등에 따라 운영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적

사업으로 다음 해 재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공무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 채용해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단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 조정 및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

※ 이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름

자.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녹지사업팀(051-888-712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제한사항 및 결격사유 세부내용

○ 「부산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 「부산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참여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기준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 겹칠 시 **중복참여 불가**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반복 참여자 선발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채용하며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
-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② 4억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①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
<2025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70%)	1,674,409	2,752,861	3,517,747	4,268,441	4,975,734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70%)	5,645,364	6,291,900	6,938,436	7,584,972	8,231,508

- ②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부산광역시를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에서 7,700만원을 기본공제

-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시작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시작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붙임 2】 우대조건 세부 설명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지원

□ 국가보훈관계법령 상 취업지원대상자 및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법률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등

※ 공고일까지 가산점 적용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유리한 1개만 적용되며,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요망

○ 모집분야 별 우대조건 세부기준

모집분야	우대조건
재선충병 모니터링	○ 관련경력 : 산림, 행정 및 생명과학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 산림 및 전산 관련 학과 ○ 산림관련 자격증 (나무의사 자격증 포함) ○ 전산·측량관련 자격증
적용기준	○ 관련경력 : 최대 4년 인정 -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력 (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경력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주 40시간 근무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제는 근무시간에 따라 일부 인정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 ○ 관련 자격증 : - 분야별 배점이 가장 높은 자격증 1개씩만 인정 - 재선충병 모니터링 분야는 두 분야의 자격증 점수를 합산 ○ 관련분야 학과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이상, 가장 높은 학위 기준 ○ 장애인 가산점 : 각 전형별 시험마다 만점의 5% 가산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시험마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점비율 적용

○ 관련분야 자격 인정 세부기준

구 분	내 용
산림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이상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무인멀티콥터 분야 자격증 소지자(4종 이상)
전산·측량 관련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자격증 및 컴퓨터활용 능력(1, 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한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지적 (산업)기사
산림관련 학과 인정 범위	- 임학, 조경학, 임산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생물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전산관련 학과 인정 범위	- 컴퓨터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전산, 정보통신, 정보공학, 응용시스템, 정보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공학, IT융합 등 전산 관련 학과 - 이외의 학과의 경우, 대학알리미 학과분류에 따른 표준분류계열(소) 단위 가 '정보·통신공학·전산학·컴퓨터공학·응용소프트웨어공학·인공지능공학'에 해당하는 학과에 한하여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 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제24조 ※ 공고일까지 가산점 적용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유리한 1개만 적용되며,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요망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최소 4명 이상 모집분야부터 가점부여 가능)